

■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	○		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서약서	-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	배우자	·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함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여부 확인 (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본인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· ※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○		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 ·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가점제당첨자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·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·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·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·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·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·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 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·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·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·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하여 "상세"발급. ·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	·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(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)
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·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· ※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축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본인발급용 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
	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.(※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)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,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
 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 ※ 상기 서류 및 당첨자제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